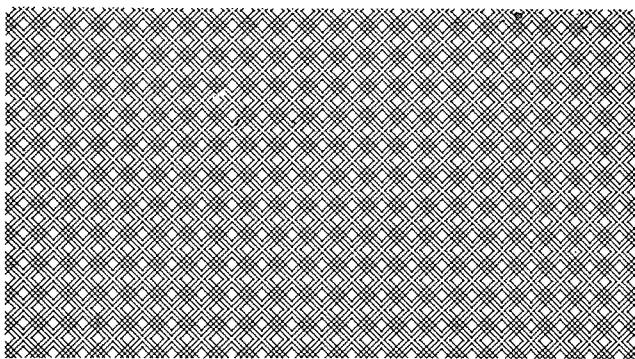


## — 施行令에 관한 事項 —



### 建築行政相談

‘80. 8. 1. — 8. 31.

相談時間：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1時부터 3時  
相談電話：72-7653, 7685

문1：국립대학 건축물을 설계만 하였는데 준공검사 신청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공사감리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만 당해 건축공사의 완료에 관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용 건축물은 법 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2：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1항 1호의 8m란 그 부분의 높이를 기준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일조권 완화규정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8m란 그 건축물의 부분 높이가 아니고 최고 높이를 기준하는 것이며 일조권 완화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시행하게 됩니다.

문3：아파트 지구내의 대도로변에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습니까?

답：시장 규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내의 판매시설은 아파트 지구내도 건축할수 있습니다.

문4：방송국등은 어느 시설에 포함되며 지대가 급경사지 일 경우 지표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업무시설에 포함되며 지표면에 고저차가 심할경우 3m이내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합니다.

문5：별동 부속 건축물을 건축시 몇 m<sup>2</sup>까지 대지 경계선에서 띄우지 않습니까?

답：10m<sup>2</sup>미만의 부속 건축물.

문6：건물높이 제한에서 도로와 대지가 고저차가 있을때 어디를 기준하여야 하는지요?

답：도로와 대지의 고저차가 있을시는 1m를 감하고 나머지 차이를 1/2한 높이에 도로 가상면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문7：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76평 대지인데 건축이 가능 한지요?

답：대지 면적 최소한도는 100평 이상이어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80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대지 면적 최소한도를 구제 받을수 있다하더라도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6조 및 7조 3항의 규정과 주거지역 전폐율 50%를 적용하게 되면 2종 미관지구에서의 최저 총수인 3층인 경우 건축면적 150m<sup>2</sup>가 확보될수 없으므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문8 :** 기존 2층 건축물이 건폐율 60%인데 건축당시에는 적합하였는데 3층으로 증축코자 하는데 3층 증축부분을 현행 건축법 건폐율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답 :** 기존건축물의 수직증축은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 규정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문9 :** 상업지역이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에 기존건물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 용도지역에 더 악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문10 :** 주거용과 비주거용 구분은?

**답 :** 주택, 연립주택, Apt. 이외는 비주거용으로 봅니다.

**문11 :**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겹치는 대지인데 어느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답 :** 건축법 제52조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일부가 노선 상업지역에 걸친다면 전체대지는 노선상업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문12 :** 그린벨트내에서 공작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는 형질변경허가를 선행한 후라야 가능합니다.

**문13 :** 일조권 완화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며 법에 적합한 기존 2층 건물위에 3층을 증축하는데도 현행법대로 확보하여야 됩니까?

**답 :**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완화가 안되어 있고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하였다손 치더라도 증축시에 현행법대로 증축부분은 확보하여야 됩니다.

**문14 :** 300평 대지상의 기존주택이 있는데 가정형편상 독립주택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건물이 아니면 현행법상 적합하게 분할후 신축으로 하셔야 합니다.

**문15 :** 연립주택을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답 :** 공동주택의 형태는 계단식, 복도식, 중층형식 등 형태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건축가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좋은 형태의 공동주택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문16 :** 기존건물에 증축을 할때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 :**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적이 특수건축물인 경우 495m<sup>2</sup> 일반건축물인 경우 661m<sup>2</sup> 이하이면 시공자 선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17 :** 균린생활시설에 면적제한이 있나요?

**답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건축자재의 소매점, 이발관, 미용원, 세탁소, 소개업소, 수리점, 기원, 사진관, 목공소에 있어서는 300평방미터 미만에만 균린생활시설로 봅니다.

**문18 :** 기히 계약된 설계를 하는중 사무소 폐쇄명을 받을 때 설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 :** 기히 계약신고된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문19 :** 지하층 설치 대상건물이 아니라는 지하층을 포함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 지하층 구조에 맞게 시공하여야 되는지요?

**답 :** 지하층의 구조는 철근 20cm이상 두께, 반자높이 2m, 50m<sup>2</sup>이상 일때 주계단외 비상방출구를 설치하는 구조여야 하므로 지하층 설치대상 이외 건물이라도 지하층을 설치할때는 법령에 맞는 구조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문20 :** 주거 전용지역내 인접대지 경계선의 소정거리는 얼마인가요?

**답 :** 처마끝에서 1.0m 이상 외벽에서 1.5m 이상 종교용 건물은 10m 이상 소정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21 :** 주거지역인 공대지 입니다. 지하실만 건축하고자 하는데 꼭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가내공장 용도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 :** 주거지역이므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채광상, 환기상 지장이 없다면 지하실에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내공업이라도 공장의 용도로는 불가합니다.

**문22 :** 주거지역에 200평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작은대지로 분할을 해야 하는지요? 그냥 지어도 호화주택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 :** 분할하실 필요없이 그냥 200평 대지에 건축하셔도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호화주택의 범위는 대지면적 250평 건축연면적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23 :** 이웃집의 내부가 다 들여다 보이게 창을 냈는데 괜찮은지요?

답 : 대지경계선에서 2m 이내에 이웃집의 내부가 들여다 볼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할때는 차면상 유효한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문24 : 25m 도로변 주거지역에 건축할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과 신문지상에 일조권 완화한다는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 : 건축물의 높이가 8m 이상일 경우 높이의 한도  $H \leq 4D$  8M이하일 경우  $H \leq 4D$  (정남, 정북)이고 일조권 완화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개정 공포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문25 : 건축허가시 채권을 구입한후 사정에 의하여 2/1로 면적이 줄었을 경우 채권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까?

답 : 허가청에서 미사용 증명원 (주택은행 소정양식)을 교부받아 해당은행에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단 준공검사필증 교부전>

문26 : 주택지내 사무실을 건축할때 주택내부가 관망되는 문제등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답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차면상 유효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27 : 자연 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2층이하의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28 : 택구장을 하던 장소를 간이음식점으로 변경사용코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관할구청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29 : 기히 계약한 설계를 하던중 건축사 사무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기 계약 설계도 못하는지요?

답 : 행정처분일 이전에 이미 수탁한 설계는 동행정처분에 불구하고 계속 수행할수 있습니다.

문30 : 연립주택 3층이 가능합니까?

답 : 3층으로 가능하며 80.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31 : 계획중인데 300m를 건축 계획중인데 허가시 소방시설을 해야 하나요?

답 : 소방법 규정에 의거 사업장 200m<sup>2</sup>이상인 전축물은 소방시설을 해야하나 축사(제사, 돈사, 우사등)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문32 : 전축허가시 전화시설에 관한 도면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허가과정에서 행정판서가 전화국과 협의를 하는지요?

답 : 허가 신청시에는 전화시설 배선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좋으며 전화국과 협의하지 않고 건물 준공신고서 제출시에 건축주가 전화국에 신청하여 구내 통신설비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문33 : 유치원으로서 연면적 180평을 기초공사중인데 건축주가 행정청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 : 특수 건축물 건축시에는 기초의 철근, 배근, 완료한때와 옥상층의 철근, 배근, 완료한때 3일이내에 허가청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 허가청으로부터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建築条例에 관한 事項 —

문1 : 연립주택의 세대상 면적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답 :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음니다만 건축심의시 1세대당 대지면적을 25평 정도를 기준심의하고 있습니다.

문2 : 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76평 대지인데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대지 면적 최소한도는 100평 이상이어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80조 제 4 항 단서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구제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 6조 및 7조 3 항의 규정과 주거지역 건폐율 50%를 적용하게 되면 2종 미관지구에서의 최저층인 3층인 경우 건축면적 150m<sup>2</sup>가 확보될 수 없으므로 건축이 불가합니다.